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

-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을 체결한다.

- 급여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	감경		기초생활 수급권자
			15%	9%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8	60,869	40,580	

-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월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3)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용하나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40% 감경 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를, 60% 감경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6%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4)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 5)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3. 비급여 항목

- 식사비용은 1회 3,500원, 간식비용은 무료이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자가 사망했을때
- ②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④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정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② 본인부담금 감정이 확인된 경우 감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⑤ 비급여비용이 변경 하려면 재계약 후 적용한다.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물배상

이용인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해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위급시 조치

이용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배상책임

장기요양요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인을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만, 자연사 또는 질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이 이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지정된 승하차 장소외에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